

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787 / 전송 731-6790

문서번호 주기 58500 - (24)
 시행일자 96. 7. 3.
 (경유) (제 1 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 법무담당관 심사관	
주택 국장	전결		
주택기획과장	1/3		
주택관리계장			
기안	이 동 일		

고시공
 1996. 7. 03
 제1996-248호

결재
 1996. 7. 03
 주택국장

제 목 영동아파트3지구(서초지구) 개발기본계획변경(안) 공람공고

1. 서초구 주택 58500- 307호('96. 2.21)와 관련입니다.
2. 위 공문번호에 의거 서초구에서 요청된 영동아파트 3-2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, 「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의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가. 영동아파트 3-2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(안)

지구별 위치	시설명	면적		비고
		변경 전	변경 후	
3-2 지구 (서초구 1682 번지 일대)	주택용지	371,862.11	370,662.11	1,200㎡ 감소
	분구중심	9,788.43	10,988.43	1,200㎡ 증가 (1개소 신설)

나. 변경사유 : 영동아파트지구내 극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기존 상가 시설 수용을 위한 분구중심시설 1개소 신설.

붙임 : 1. 공고(안) 1부.

2. 영동아파트 3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004

27

원본대조필

(제 2 안)

수 신 : 공보담당관
제 목 : 시보 게재 요청

1.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람을 실시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(제 3 안)

수 신 : 서초구청장
참 조 : 주택과장
제 목 :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 개발기본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

1. 서초구 주택 58500- 307호('96. 2.21)와 관련입니다.
2. 위 공문번호와 관련 귀구에서 요청한 영동3-2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(안)에 대하여 검토하고 「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규정」 제3조에 의한 주민공람을 위하여 시보에 공고하고 통보하니,
3. 귀구에서는 구보게체 및 해당 동사무소, 아파트 단지 등에 게시공고를 통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공람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. 끝.

첨 부 : 1.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(안) 공람공고 1부.
2.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 개발기본계획 변경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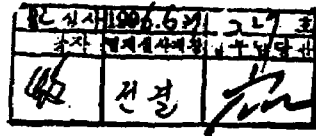


005

2-2

5

공 고 (안)

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6-248 호

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 개발기본계획 변경(안) 대하여 주택 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.

2.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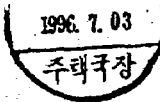
1996. 7. 3.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람기간 : '96. 7. 3. ~ '96. 8. 1. (30일간)
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, 서초구 주택과

다.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(안) 내용



(1) 영동아파트 3-2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

주 구 별 위 치	시 설 명	면 적		비 고
		변 경 전	변 경 후	
3-2 지구 (서초구 1682 번지 일대)	주택용지	371,862.11	370,662.11	1,200㎡ 감소
	분구중심	9,788.43	10,988.43	1,200㎡ 증가 (1개소 신설)

원본대조필

(2) 변경사유

영동아파트3지구(서초지구)내 제2지구안의 극동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추진에 따라 극동아파트단지내 주택용지상의 기존 복리시설(상가)의 재건축을 위하여 주택용지 1,200㎡를 분구중심으로 변경

(3) 관련도서 : 생략(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습니다)